

---

##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정훈\*\*

- |                          |                          |
|--------------------------|--------------------------|
| I. 서론                    | 3. 입법론에 대한 재검토           |
| II. 데이터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및 취지 | IV.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한 해석 |
| 1. 데이터산업법                | 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
| 2. 부정경쟁방지법               | 2. 입법론에 대한 재검토           |
| 3. 저작권법                  | V. 특정 분야에서의 데이터 보호 문제    |
| III. 데이터 개념에 따른 적용범위 검토  | 1. 산업데이터 보호              |
| 1. 보호대상 및 규율범위           | 2. 기존의 법제도와와의 관계         |
| 2. 저촉규정에 따른 적용영역         | VI. 결론                   |

---

\* 본 논문은 필자가 작성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데이터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방안 검토”(2022-04),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한·일간 법제 비교 분석”(2022-07)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초록

최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규정 간 정합성의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상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규범조화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입법론적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의 규정 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규율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데이터 보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산업데이터

## I. 서론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연계·유통, AI 활용 등 데이터 전(全) 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을 세부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으며,<sup>1)</sup> ‘디지털집현전법’의 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에서부터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한편, 2021년 7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새로운 정책 수요 및 외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코자 하였다. 세부 추진전략으로서, 디지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신규과제를 추가하는 한편, D·N·A, 비대면 인프라, SOC 디지털화 등의 기존과제는 확대·개편하였다.<sup>2)</sup>

이처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sup>3)</sup> 시대에 적극 대

1)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기획재정부, 2020, 11면.

2)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1, 10면.

3) 소비자가 금융사 등에 자신의 정보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 주

응코자 계열사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구상하는 등 관련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sup>4)</sup> 의료분야에서도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 사업이 본격화 되는 추세에 있다.<sup>5)</sup>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1 데이터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20년도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20조 원으로 '19년 대비 18.7% 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성장률 9.8%에 비해 최근 3년간('18~'20) 연평균 성장률은 13.3%를 나타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최근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상호간의 부정합성, 적용범위 및 규율범위 측면에서의 불명확성 등을 상당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보호대상 내지는 권리의 객체로서 포섭하고자 하는 최근의 제·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 규정 간의 모순이나 저촉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적절한 해석방안 등을 검토해보고, 입법론적 차원에서 해당 법규정이 당초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다시금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권리의 객체로서 규정하고 있던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자산으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sup>7)</sup>(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과

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0641&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 2022. 2. 26.

4) 김한결, "마이데이터 시대 맞아 금융권 통합 앱으로 승부건다",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037>>, 검색일: 2022. 2. 26.

5) 구민기·차준호, "[단독] 네이버, 의료 빅데이터 사업 나선다",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82457801>>, 검색일: 2022. 2. 26.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데이터 댐이 이끈 데이터산업 시장, 2020년 2019년 대비 18.7% 성장한 20조원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2. 20자.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규율함으로써 데이터 보유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sup>8)</sup>(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각 분야별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세부 법령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산업 데이터에 관한 법리를 별도로 규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sup>9)</sup>(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법제와의 관계 측면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데이터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및 취지

### 1. 데이터산업법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의되어 있던 3건의 법률안(데이터 기본법안,<sup>10)</sup>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sup>11)</sup>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sup>12)</sup>)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률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현재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입

7)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2022. 4. 20. 시행.

8)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9) 법률 제18692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

10) 2020. 12. 8.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182.

11) 2020. 12. 22.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820.

12) 2021. 4. 13. 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463.

법의 목적을 가진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본 법률의 목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그 기본개념인 ‘데이터’에 관해서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데이터자산<sup>13)</sup>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sup>14)</sup>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제12조).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제13조).

데이터거래사업자<sup>15)</sup>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sup>16)</su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6조),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

---

13)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말한다.

1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15)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7호).

16)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8호).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32조),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34조).

## 2.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등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제2조 제1호 카목). 이와 같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청구(제4조), 손해배상청구(제5조), 시정권고(제8조)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지행위로는, i)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ii)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iii) 무권한자의 데이터 부정 취득 등 행위 또는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 목적 데이터 제공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

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iv)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하였다.<sup>17)</sup> 그리고 iv)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으로 포섭하되, i)부터 iii)까지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제18조).<sup>18)</sup>

### 3.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19호). 여기서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제2조 제17호). 편집물 중에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

---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및 시장상황, 산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가 되고(제2조 제18호),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편집물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 규정 등에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편입되었다.

2003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도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 요건을 갖춘 때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했으나, 그와 같은 보호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즉, 창작성을 결한 경우에는 투자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측면과 함께, 창작성이 있는 편집 부분을 이용한 경우에만 침해가 되고 그 구성부분인 소재에 관해서는 아무리 많은 부분을 이용하더라도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19)</sup> 이에 꾸준한 입법적 논의를 거쳐 EU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sup>20)</sup>에서 규정하는 바와 유사하게,<sup>21)</sup>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유무를 불문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는 i) 대한민국 국민, ii)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호받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제91조). 한편, i) 데이터베이스

19)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1006-1007면.

20)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21) EU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배열되어, 전자적이거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독립적인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제1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의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제7조 제1항). 이와 같은 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 또는 기타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된다는 점에서(제7조 제4항),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동 지침에 따른 보호대상 내지는 권리의 객체로서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ii)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92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권리 귀속 주체로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20호).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상당한 투자’에 관한 것이라 볼 것인데, 이는 불확정적인 개념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구성하는 정보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그 수집·조직의 용이성, 그 보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 정보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sup>22)23)</sup> 이와 같은 각 요건을 충족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 등을 가지게 된다(제93조).

---

22) 이해완, 앞의 책, 1065면.

23) 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에서는,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하는데(같은 조 제20호),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G」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의 서적 등에 포함된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차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투자를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Ⅲ. 데이터 개념에 따른 적용법규 검토

#### 1. 보호대상 및 규율범위

##### (1) 각 법률에서 규정된 개념요소

##### 1)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및 데이터자산

각 법률에서 규율하는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와 ‘데이터자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저작물(특히, 편집저작물)’ 개념 간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산업법에서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되고, 실질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자산’에 관해서는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즉, 해당 법률에서 ‘데이터’ 개념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체적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 상당히 광범위한 형태로 규정한 반면, ‘데이터자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 즉 데이터생산자가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보호의 근거 내지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자산’이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즉, 자산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권리부여가 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서, 민법상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데이터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의 비경합성·

24) 데이터산업법에서 ‘데이터자산’은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 내지 객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동법상의 ‘데이터’ 개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제가능성·관계성으로 인해 개인과 데이터 사이의 물권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에 데이터가 자산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법적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제시되었다. 당초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는 데이터 자산의 임치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병합된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데이터는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용자에 대한 배제성도 없으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 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으로서의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적용요건의 측면에서 그 입법모델이 된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한정제공데이터’ 개념과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sup>26)</sup>

‘업으로서’의 경우, 반복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아직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보유자에게 반복 계속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인정된

---

25) 제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14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1, 35면, 82-83면; 제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14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1, 10-11면.

26) 제385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535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1, 5-6면 참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한정제공데이터’는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전자적(電子的) 방법, 자기적(磁氣的)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상당량 축적되고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 관리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7항).

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으로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일본에서 ‘특정인에게 제공’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우리 법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 따르면 특정인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를 말하며 특정되어 있기만 하면 실제 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 및 지침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입법 관여자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가 높고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제공서비스가 오히려 본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28)</sup>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전자적 방법으로 축적되는 것에 의해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데이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축적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이익의 활용가능성, 거래가격, 수집·해석에 투자된 노력·시간·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으로서 관리하겠다는 보유자의 의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관리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업태, 데이터의 성질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제3자가 일반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만 한다.<sup>29)</sup>

‘상당량 축적·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를 ‘상당량’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전자적 방법으로 축적·관리됨으로써 부가적인(또는 상업적인)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27) 經濟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に関する指針”, 經濟産業省, 平成31年 1月 23日, 8頁.

28) 田村善之·岡村久道, “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導入の意義と考え方(改正不競争法による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活用)”, 『N B L』, No. 1140(2019), 9頁.

29) 經濟産業省, 前掲資料, 9-10頁.

‘상당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므로 데이터보유자의 측면에서 상당량 축적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용자가 이용한 데이터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가 부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0)</sup>

아울러,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한 결과,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의 양이 크지 않다고 해도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이 있다. 예를 들면, 특별한 판매데이터 및 기상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그 산출물로서 특정일의 특정점포의 손님 수에 관한 예측데이터가 만들어진 경우, 해당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만약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데이터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축적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당량의 데이터가 이용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1)</sup>

동 규정에 따른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는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이 기대되는 정보가 폭넓게 해당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상의 정보’에는 지도 데이터, 기계의 가동 데이터, AI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학습)용의 데이터세트(학습용 데이터세트)이나 해당 학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학습이 끝난 모델 등의 정보가 해당될 수 있고, ‘영업상의 정보’에는 소비 동향 데이터나 시장 조사 데이터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sup>32)</sup> 그리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요건은 본래 ‘영업비밀’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sup>33)</sup> 영업비밀은 사업자가 비밀로서 관리하는 정보인 반면, 본

30) 田村善之·岡村久道, 前掲論文, 9頁.

31) 田村善之·岡村久道, 前掲論文, 13頁.

32) 經濟産業省, 前掲資料, 12頁.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로서의 ‘기술상 정보’로서는 원재료 배합방법 등 물건의 제조방법이나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그 밖에 여러 정보가 해당될 수 있으며, ‘영업상의 정보’의 예로는 고객 명단, 거래처 리스트, 투자 등 사업계획, 인사관리 등 조직관리 기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상조 편저(박준석 작성 부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311면.

33)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1) 영업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으로서의 데이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차이점에 착안하여 양자의 중복을 피하고 영업비밀을 데이터 관련 규정의 규율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의 일종인 편집저작물에 관해서는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할 것이 핵심적으로 요청된다. 즉,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소재를 모아 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의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체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열 및 구성방법을 모방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sup>35)</sup> 그리고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저장·추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전자적 형태의 편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사전이나 전화번호부, 연감(年鑑), 백서(白書), 인명부, 주소록 등 편집물은 전자화된 형태가 아니어도 데이터베이스

비밀 보유자에 의해 관리될 것, 2) 일정 수준의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관리될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조 편저(박준석 작성 부분), 위의 책, 315-316면.

34) 일본의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나, 각 규정에 대한 해석 및 구체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우리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35) 오승중,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1060면.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sup>36)</sup>

데이터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데이터에 포함된 개별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의 요건,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면 된다.<sup>37)</sup> ‘사실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센서를 통해 수집한 기온·온도·압력·회전수·진동·주파수 등 사실 그 자체로서의 데이터라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하여 일본의 재판례 중에는 자동차부품제조사 등의 회사명, 납입처의 제조사별 자동차부품 조달량 및 납입량, 할당(share) 비율 등 조달상황이나 상호관계의 데이터를 정리한 것에 대해, 객관적 사실 내지 실재 그 자체이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sup>38)</sup>

한편,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집합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되어야만 한다.<sup>39)</sup> 설사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의 체

36) 오승중, 위의 책, 1061면.

3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38) 名古屋地判平成12年10月18日判タ1107号293頁[自動車部品データ事件]; 차상육,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494(2020), 14면 재인용.

39)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다만, 해당 판결에서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



계적 배열 또는 구성 등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여지는 존재한다.

## (2) 각 법률에 따른 개념요소 간의 관계

각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자산’의 개념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개념이 모두 포섭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상당 영역이 포섭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산업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개념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의 자료 또는 정보’<sup>40)</sup>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체적 특성을 갖지 않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의 개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개념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산업법에서는 ‘데이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로서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개념에 근거하여 규율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위임규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를 구체화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대상 간의 불합치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위임의 취지를 살리고 규정 간 정합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자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업(業)으로”의 개념은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생산자” 요건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한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은 데이터산업법상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

---

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40) 이에 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을 찾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광학매체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는 데이터산업법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데이터산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 자산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개념을 구성하는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보다도 더욱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을 실시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개념을 더욱 제한적으로 보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므로, 각 법률과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대상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각 법률상의 개념을 상호호환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자산 개념을 형해화하는 것으로,<sup>41)</sup> 입법 과정에서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관해 각계에서 제기된 의문점을 무색하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각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상정하는 유사개념을 비교해 보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로 정의되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객체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데이터자산의 경우 데이터 생산 주체로서의 별도 요건을 요한다는 점, 만들어진 결과물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점 등에서 다소 협소한 개념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투여된 상당한 투자(및 노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각 법률의 취지라는 점에서 일응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1) ‘데이터자산’으로서의 개념에 독자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와 같은 용어를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 2. 저촉규정에 따른 적용영역

데이터산업법 제7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에 관해서는 동 법률보다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저작권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엄밀히 말해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권리에는 저작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저작권 이외의 권리들을 배제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관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제반 권리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데이터산업법 제13조에서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취지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동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에 규정된 저촉규정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데이터 및 데이터자산에 저작권법상 저작물,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sup>42)</sup> 관련 법률안이 병합되어 완성된 최종 법률안에서는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에 관하여’와 유사한 문구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이터세트 내지 데이터의 집합물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되

42) 제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2021, 14-15면.

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규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자산 등에 관해서는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소재가 되는 개별 데이터가 저작물성을 가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사실 그 자체로서의 데이터 등의 경우에는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에서 개별 데이터 내지 데이터 집합물이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율을 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각 법률의 선후관계 및 규율 대상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각 법률의 적용 여부가 순차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sup>43)</sup>

### 3. 입법론에 대한 재검토

최근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들의 입법 배경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호 법제가 권리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거나 도리어 산업 발전의 장애사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로 제시된다. 특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규율하게 된 취지는, ‘비공개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43) 데이터산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령이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다고 해석이 된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 관한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데이터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 상호간에 저촉 내지 충돌이 있을 경우 저작권법 등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상호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산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보호대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궁극적으로는 문제된 사안에 따른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상조 편저(문선영 작성 부분), 앞의 책, 231면; 김원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2011), 49면 참조. 다만, 저작권법과의 충돌 및 저촉 여부를 고려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들과의 충돌가능성 이외에도 권리 제한규정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유보한 취지와와 저촉가능성까지도 아울러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수 있고, 공개된 데이터 중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어 있는 ‘정형데이터’는 저작권법에 따른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등에 착안한 것이다.<sup>44)</sup>

〈데이터의 종류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특허청 자료)<sup>45)</sup>〉

구분	비공개 데이터	공개 데이터
정형 데이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② 형사처벌(해외유출 15년/15억원, 국내유출 10년/5억원)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 -(창작성 有) 사망 다음해부터 70년 -(창작성 無) 제작 완료/갱신한 때로부터 5년간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② 형사처벌(5년/5천만원, 병과 가능)
비정형 데이터		<b>〈보호 공백〉</b> (명시적 보호규정은 없으나,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한 판례 있음)

그리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개정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을 상당 부분 차용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본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입법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규정에 포함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였으나,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편집저작물과 구분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러한 정보를

44) 제385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2-3면.

45) 제385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3면.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1항 제10호의3),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을 가지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제12조의2). 따라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컴퓨터에서 검색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창작성이 없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인해 투입된 노력과 자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up>46)</sup>

일본은 데이터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기존 법제도하에서 입법적 보호가 미비했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제조치의 신설(제2조 제1항 제11호~제16호, 제2조 제7항, 제19조 제1항 제8호), ②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제2조 제1항 제17호·제18호, 제2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9호), ③ 증거수집 절차 강화(제7조) 등을 들 수 있다.

데이터는 그 성질상 복제·제공이 용이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이 될 경우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반면,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즉, 사실에 관한 데이터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보호가 되기도 어렵다. 한편, 해당 데이터가 비밀 관리성 및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도 보호가 곤란하다.<sup>47)</sup> 따라서 가치있는 데이터 중에서

46) 中山信弘, 『저작권법』, 윤선희(역), 법문사, 2008, 107-112면 참조.

47) 田村善之·岡村久道, 前掲論文, 6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데이터를 ‘한정제공데이터’라 하고, 악질성이 높은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금지청구권 등을 마련한 것이다.<sup>48)</sup>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법제와 비교한다면, 매체적 특성이나 창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보호의 범주가 더욱 넓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구분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일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저작물)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한정제공데이터)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2003년 이후) (데이터베이스)	

한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소위 ‘비정형데이터’가 입법적 공백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비정형 데이터 상태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호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가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전제로 본다면,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RDB)<sup>49)</sup>에 의한 구성이 곤란하므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48)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 技術的制限手段等)”, 經濟産業省, 平成31年, 5頁.

49) 관계형 모델(relational model)에 따라 키(key)와 값(value)을 표(table) 형태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관계형 모델은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수학적 논리 관계 개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유연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NoSQL 방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sup>50)</sup>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성립하기 위한 소재의 ‘체계적’ 배열 또는 구성이라는 요건은, ‘자료 검색의 편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흔히 얘기되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요건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열 및 구성방법을 모방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이해된다.<sup>51)</sup>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조화의 정도가 낮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sup>52)</sup> 이는 구조화 방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 소재로서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배열 및 구성되어 일응의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개별 데이터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입법적 미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sup>53)</sup>

---

을 사용하여 행(row)과 열(column)로 표현한 표(table)와 행과 열의 상관관계로 정의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상용 프로그램으로는 오라클(Oracle),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server, IBM의 DB2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프리웨어로는 MariaDB, PostgreSQL, SQLite 등이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4087-6](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4087-6)>, 검색일: 2022년 2월 18일.

50) NoSQL은 대규모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비관계형(Non-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로,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아파치 카산드라(Apache Cassandra), 허둡(Hadoop), 몽고디비(MongoDB) 등이 있다. 그리고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특정한 사례에 적합한 데이터에의 접근 및 관리를 위한 네 가지의 모델을 제공한다. Document Store의 경우,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JSON 기반 문서에 계층적으로 저장된다. Key-Value Store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서, 데이터는 키(key)-값(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컬렉션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Wide-Column Store는 관련 데이터가 단일한 열(column)에 중첩된 키(key)-값(value)의 세트, Graph Store는 데이터가 노드, 엣지, 데이터 속성으로 구성된 그래프 구조에 저장된다. Microsoft, “Relational vs. NoSQL data”, Microsoft Build, <<https://docs.microsoft.com/en-us/dotnet/architecture/cloud-native/relational-vs-nosql-data>>, 검색일: 2022년 2월 19일.

51) 오승중, 앞의 책, 1060면.

52) 임원선,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명법률』, 제31권 제3호(2021), 86-87면.



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데이터베이스 법제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규율영역 및 입법적 공백 상황 또한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은 용어를 비롯한 일부 요건의 조정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 상황 내지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같을 수는 없으며,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의 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내 관련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IV.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한 해석

### 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데이터산업법은 제12조에서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의 1유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4)에서는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는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53) 상당수의 데이터는 분석 및 가공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부가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태깅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포섭될 여지가 더욱 높아진다. 임원선, 위의 논문, 87면;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연구보고서, 2020, 15-16면.

기술적 조치에 대한 무력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제2조 제28호 가목),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제2조 제28호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가목의 조치는 ‘접근통제조치’, 나목의 조치는 ‘이용통제조치’로 분류된다. 그리고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104조의2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접근통제 및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 즉 무력화를 위한 장치 등의 유통 및 서비스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sup>54)</sup>

이처럼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에 관해서 이원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 금지의 대상과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중 접근통제조치에 대해서만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용통제조치에 대해서는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용통제조치를 무력화하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54)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점,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규제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sup>55)</sup> 한편, 무력화 예비행위의 금지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두 유형인 접근통제조치와 이용통제조치 모두에 대해 적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관해 선행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던 저작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데이터산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데이터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4)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sup>56)</sup> 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와 관련하여, 데이터산업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형태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각 법률 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정사용 행위의 태양을 열거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무력화 예비행위만 금지하는 것인지가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동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즉, 데이터자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에 따르되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4)에 따르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4)의 규정만을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에 대해서만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만, 이는 의도적인 입법기술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입법을 추진

55)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699면.

56)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개정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85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5-6면.

하는 과정에서 각 법률 간의 정합성을 충분히 도모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에 관해서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율방식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위임한 취지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한다면, 제반 규정의 취지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57)</sup>

한편, 저작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데이터산업법 제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sup>58)</sup>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규율이 불가능한 그 이외의 데이터 등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행위의 경우, 데이터산업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 2. 입법론에 대한 재검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규

---

57) 데이터자산의 보호규정에서 무력화 행위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던 데이터 기본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와 같이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12조(데이터 자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정은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 및 배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의문점 내지 개정 규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기존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장치의 제공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었으며,<sup>59)</sup>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에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① 보호대상에 데이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 추가, ② 최신 보호기술(‘activation’ 방식)에 대한 명확화, ③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명령부호의 양도·제공 등 추가, ④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서비스의 제공 추가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보호대상에 데이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추가된 배경을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증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필요성 등 정책적인 필요성과 함께 영상·음·프로그램 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적 수단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구 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60)</sup> 구법상 영상이나 음, 프로그램과 달리 사람이 시각이나 청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보호기술이 적용되어 있어도 해당 규정의 규율 범위 밖이었지만, 본 법개정으로 기술적 제한수단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정보(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것에 한함)의 처리 및 기록을 추가하게 되었다. 해당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로는,

59) 관련 규정의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회수를 위하여 콘텐츠제공 사업자는 무단 복제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한수단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무효화하는 장치 등이 유통됨에 따라서 콘텐츠제공사업자는 큰 위협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콘텐츠제공사업의 존립기반을 확보하고 콘텐츠제공사업자 간의 경쟁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들 무효화장치 등의 제공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로 한 것이다. 茶園 成樹, 『不正競争防止法』, 第2版, 有斐閣, 2019, 99頁.

60)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不正競争防止小委員會,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資料 3-1)”, 經濟産業省, 平成29年 9月 26日, 1頁.

AI의 심층학습(딥러닝)에 이용되는 데이터, 컴퓨터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 등이 제시되었다.<sup>61)62)</sup>

그 외에, 구법 제2조 제7항의 “영상, 음 또는 프로그램과 함께”의 해석과 관련해서 ‘activation’<sup>63)</sup> 등에 의한 방식이 기술적 제한수단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sup>64)</sup>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기능을 가진 명령부호(시리얼 코드 등)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를 대신하여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역무의 제공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sup>65)</sup> 이처럼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한정제공데이터 규정의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그 취지나 배경, 규율의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입법례로서 참고함에 있어서는 각 규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sup>66)</sup>

그러나, 최근 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

61)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前掲資料, 15頁.

62) 해당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감안하여 일정 범위 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不正競争防止小委員會, 前掲資料 3-1, 5頁.

63) 이는 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시리얼 번호 입력 등에 의하여 정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함으로써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4) 第二条 7 この法律において「技術的制限手段」とは、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 磁気的方法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により影像若しくは音の視聽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実行又は影像, 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記録を制限する手段であつて, 視聽等機器(影像若しくは音の視聽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実行又は影像, 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の記録のために用いられる機器をいう。以下同じ。)が特定の反応をする信号を影像, 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とともに記録媒体に記録し, 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又は視聽等機器が特定の変換を必要とするよう影像, 音若しくはプログラムを変換して記録媒体に記録し, 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によるものをいう。

65)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前掲資料, 15-16頁.

66) 일본 산업구조소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자료를 보면,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과 데이터에 관한 규정의 관계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會・不正競争防止小委員會, 前掲資料 3-2, 5頁.

부정경쟁방지법에 대비하여 볼 경우, 1)에서 3)까지의 행위는 한정제공데이터에 관한 규정, 4)의 행위는 기술적 제한수단에 관한 규정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해당 규정에 따른 규율의 대상을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개념에 상응하는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개념으로 통일하고 있다.

결국 규율대상은 한정제공데이터와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규율방식 측면에서는 용어적 유사성 이외에는 공통분모가 없는, 별개 취지의 개정 규정을 차용하여 결합한 형태로 입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와 무력화 예비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한다. 일본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각각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를 보면,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일종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규율하는 형태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구분	기술적 제한수단을 무효화하는 장치 등의 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 등
규정의 취지	콘텐츠 제공자의 영업상 이익을 확보하고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도모함	데이터 제공자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고 투자 회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도모함
객체	신호방식, 암호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술적 제한수단에 의해 시청 등이 제한된 콘텐츠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술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적 데이터(기술적 관리성, 외부 제공성, 유용성의 요건)
행위	객체를 보호하는 기술적 제한수단을 무효화하는 장치의 양도 등	객체의 부정취득 등

6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정경쟁”이란 다음과 같다.

17. 영업상 이용되는 기술적 제한수단[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音)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적 제한수단을 무효화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를 동법에서 규율코자 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해당 기능을 갖는 장치 등의 제공행위에 비하여 개개의 무효화 행위 자체는 피해가 한정적이며 이를 파악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68)</sup> 한편,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무력화 예비

---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전자적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氣的) 방식,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18호 및 제8항에서 같다)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제한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세트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이나 명령부호(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해당 명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8호에서 같다)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8. 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상 이용하는 기술적 제한수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세트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명령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해당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8) 茶園 成樹, 前掲書, 105頁.



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안이나 검토보고서 등에서 그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sup>69)</sup> 궁극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제한수단)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보호의 대상	영상·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 정보(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의 처리, 영상·음·프로그램·정보의 기록	데이터 ※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제한수단)	신호방식, 암호(변환)방식	-
무력화 행위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 및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인도를 위해 전시·수출·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또는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앞선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롭게 보호영역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주가 기존 저작권법으로 상당 부분 보호가 가능

69) 제385회 국회 제2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년 3월 16일) 회의록을 보면 법안의 취지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지만, 해킹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간략히 설명될 뿐 규정의 도입배경이나 논의과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제385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13-14면에서는 해당 행위 유형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하는 한편, 이를 “해킹과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부정사용행위 유형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개정 문언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역시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관해서는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은 그 대상이나 방식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므로, 향후 동 규정의 개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유형화하는 한편, 예외사유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 V. 특정 분야에서의 데이터 보호 문제

### 1. 산업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호에 관한 특수한 문제로서, 특정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산업법 역시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법제는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처럼, 향후에는 각 산업 분야별로 취급되는 데이터의 특성과 활용되는 방식 등을 고려한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 규율체계가 별도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소비방식의 비대면화 등으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위한 추진체계 및 민간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sup>70)</sup>(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법’이라 한다)을 들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70) 법률 제18692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분야에 적합한 데이터와 관련된 별도 법리를 정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내지는 고민해야 할 지점들에 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법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한다(제2조).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제7조 및 제8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다(제9조).

아울러,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무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제11조 및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해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 2. 기존의 법제도와와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된 법리를 구성하고 선행 사례들을 마련하고 있던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산업디지털전환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존 규정과의 접점 내지는 중첩영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주된 규율의 대상인 ‘산업데이터’는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은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해당 업종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산업의 범위를 지정해놓고 있다.

[별표1]에 따른 산업 범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sup>71)</sup>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sup>72)</sup>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sup>73)</sup> ‘방송업’,<sup>74)</sup> ‘연구개발업’<sup>75)</sup>

71)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하는 임베디드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거나 가상현실(VR, AR)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7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73)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74)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가입형 또는 유료제 등 개별

등의 산업영역이 포함되므로, 해당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는 모두 산업데이터로 포섭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산업영역에서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창작성 유무, 소재의 체계적 배열 또는 구성 여하에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산업디지털전환법상의 산업데이터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가 있게 된다.<sup>76)</sup>

한편, 동법 제4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도록 한 것으로, 해당 법률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sup>77)</sup> 따라서 산업데이터

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방송은 지상파나 위성, 전송 선로설비, 인터넷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방영될 수 있다. 또한, 뉴스, 스포츠, 교육, 청소년, 종교 등 특정 주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방송업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75)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 기초연구—어떤 특수한 응용이나 사용 계획 없이,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활동
2. 응용연구—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독창적인 탐구이지만 주로 특정 실천 목표나 목적에 맞춰진 연구활동
3. 실험개발—새로운 재료, 상품, 혹은 장치를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공정, 체계 그리고 서비스를 설정하고 행하는 혹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 혹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획득해 존재하는 지식을 이용하는 체계적 작업 활동

76)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해당 법률이 이처럼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발생하는 업종별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개별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382회 국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73호)·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509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0, 17면 참고.

에 포함된 저작(인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고, 산업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데이터산업법<sup>78)</sup> 등 해당 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데이터 관련 법령들과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향후 규율대상 및 적용순위 등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sup>79)</sup> 그리고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제2항 및 제3항).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제4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7항).

이는 산업데이터의 권리관계 규율을 위한 법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존 법제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80)</sup>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

77) 제382회 국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의 검토보고서, 2020. 11., 27면. “예컨대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특정 산업데이터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특허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타인의 산업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78)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9)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2호).

80) 제382회 국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11-12면.

권리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세부내용이나 적용법리를 달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법적용상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법률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성’이란 함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동법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근거와 마찬가지로 인적·물적 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기초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사용·수익할 권리’에 관해서는, 민법상 소유권 등의 내용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아닌 산업데이터에 특유한 이용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제 적용상의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81)</sup> 이와 같은 점은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동규정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적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침해 판단을 위한 근거로서의 구체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sup>82)</sup>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

---

“현행 법체계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권리·활용에 대한 규범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데이터의 집합체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규정은 두고 있으나 개별 데이터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장에 IoT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 공장 소유 업체와 데이터 수집 업체가 상이한 경우에 데이터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산업데이터의 권리관계에 대한 규범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81) 이성엽,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75209>>, 검색일: 2022. 2. 25. 다만, 산업디지털전환법상 ‘산업데이터 활용’은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3호), 일용 이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82)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45면.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 개념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누적적으로 가공 및 활용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당초 산업데이터가 어떠한 저작물 등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가공 및 배열방식에 따라서 특정 시점 이후로는 산업데이터인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편집저작물로서 성립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활용목적이나 이용방식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인데, 결국 산업활동 과정에서의 데이터 처리 공정에 따라 일정 시기로부터 전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 규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적용법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법상 산업데이터 생성자 등에게 부여되는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데이터를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용 그에 상응하는 권리주체로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5년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보호가 되며 공동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sup>83)</sup> 권리의 보호 정도 및 그 행사 방식 등에 있어서도 법률 상호간의 불균형성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4)</sup>

83)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84) 행위규제 방식이 아닌, 권리부여 방식의 법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 해당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존속기간, 제한사유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상당한 미비점으로 보이며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VI. 결론

이상으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규정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최근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각 법률 규정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방안을 모색하고 그 입법적 타당성 여부에 관해 다시금 고민해 보았다. 이는 데이터 영역에서 보호대상이 기존 법률 체계에 새롭게 편입되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구제책이 마련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각 법률 규정 간의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운용을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지를 충분히 숙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즉,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경제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여러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경우, 데이터를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강하게 보호하는 접근방식이 데이터의 생산 및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층위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특정 단계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것인지 다소 의문점이 있다.<sup>85)</sup> 아울러,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저작권법에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보호기간 및

85)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대해서는,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 이외의 수요업체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를 비롯한 민감 정보들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승모, “[해설] 디지털전환을 가로막는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 국내 산업 전반 대규모 혼란 자초!”, 아이씨엔매거진, <<https://icnweb.kr/2022/51017/>>, 검색일: 2022. 5. 2.; 박장환, “[전문가 칼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데이터의 주권이 우선이다”, 아이씨엔매거진, <<https://icnweb.kr/2022/51185/>>, 검색일: 2022. 5. 2.

제한사유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두고자 한, 소위 공유정책(public domain policy)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sup>86)</sup> 이를 보호의 공백 내지 입법을 위한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단지 입법의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행한 정책적 결단을 입법상 오류 내지는 미비점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다.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데이터산업 진흥 등의 목적하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법제도 및 권리의 창설이라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추진할 경우, 현재의 우리 법제도에 따른 규율현황,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적 배경 및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특히 데이터 관련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는 규율이 필요한 데이터의 성격, 법에서 규정할 데이터의 보호방식 등에 관한 사항만이 주요한 논의점이 될 뿐 그 외의 사항은 부차적인 쟁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더 늦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한 논거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86) 임원선, 앞의 논문, 65-70면 참조.

참고문헌

〈학술지(국내 및 동양)〉

- 김원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2011).
- 임원선,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2021).
- 차상육,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494(2020).
- 田村善之·岡村久道, “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導入の意義と考え方(改正不競法による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活用)”, 『N B L』, No. 1140(2019).

〈단행본(국내 및 동양)〉

-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 오승중,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 정상조 편저,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 中山信弘, 『저작권법』, 윤선희 역, 법문사, 2008.
- 茶園 成樹, 『不正競争防止法』, 第2版, 有斐閣, 2019.

〈판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 名古屋地判平成12年10月18日判タ1107号293頁[自動車部品データ事件].

〈인터넷 자료〉

- 구민기·차준호, “네이버, 의료 빅데이터 사업 나선다”,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82457801>>, 검색일: 2022. 2. 26.
- 김한결, “마이데이터 시대 맞아 금융권 통합 앱으로 승부건다”,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037>>, 검색일: 2022. 2. 26.
- 박장환, “[전문가 칼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데이터의 주권이 우선이다”, 아이씨엔매거진, <<https://icnweb.kr/2022/51185/>>, 검색일: 2022. 5. 2.

- 오승모, “[해설]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 국내 산업 전반 대 규모 혼란 자초!”, 아이씨엔매거진, <<https://icnweb.kr/2022/51017/>>, 검색일: 2022. 5. 2.
- 이성엽,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75209>>, 검색일: 2022. 2. 25.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0641&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 2022. 2. 26.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4087-6](http://word.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54087-6)>, 검색일: 2022. 2. 18.
- Microsoft, “Relational vs. NoSQL data”, Microsoft Build, <<https://docs.microsoft.com/en-us/dotnet/architecture/cloud-native/relational-vs-nosql-data>>, 검색일: 2022. 2. 19.

#### 〈연구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연구보고서, 2020. 12.

#### 〈기타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기획재정부, 2020.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데이터 댐이 이끈 데이터산업 시장, 2020년 2019년 대비 18.7% 성장한 20조원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2. 20자.
- 제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14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1.
- 제384회 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14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1.
- 제385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535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1.
- 제382회 국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873호)·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509호) 검토보고서”, 국회, 2020.

經濟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に関する指針”, 經濟産業省, 平成31年 1月 23日.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限定提供データ, 技術的制限手段等)”, 經濟産業省, 平成31年.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会・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資料 3-1)”, 經濟産業省, 平成29年 9月 26日.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分科会・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技術的な制限手段による保護について - 参考資料 - (資料 3-2)”, 經濟産業省, 平成29年 9月 26日.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Data-Related Laws

Park, Jeonghun

Recently, the interest in ‘data’ as a base resource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promotion of ‘digital new deal’ policy, which is part of national strategic task, and discussions on it have been continui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in the private sector. In line with this trend, laws related to data protection and use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re being implemented or are about to be implemented. However, comprehensively looking at all the laws and regulations, it contains many unclear part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area of each law and the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a normative interpretation plan focusing on the main concepts of each law a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legislative level.

Keyword

Data Protection, Database, Copyright Law, Prohibition of Circumvent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dustrial Data